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73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손명수 · 이해민 · 복기왕
송기현 · 문진석 · 강준현
이정현 · 김영배 · 이성운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과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과 인하여 교환·환불에서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다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제47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

7조의2 및 제4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

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u>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 ----- ----- ----- -----<u>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u></p> <p>1.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u></p>

② (생략)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 ⑤ (생략)
<신설>

자. 다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한다.